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12월19일,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2025년12월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수진의원)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

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동 법 시행령 [별표12]에 규정된 각 위반행위(3차 이상 위반)별 과태료 기준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과태료 제재수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과태료 금액은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수의 부과대상 행위가 중대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비난정도에 상응하도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